

#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대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453 |
|----------|-----|

발의연월일 : 2024. 5. 31.

발의의원 : 조성대, 이정애, 이진환,  
박경원, 한근수, 김동훈,  
김상수, 김지훈(민)

## 1. 제안 이유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변경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침체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 내용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함. (안 제11조)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 6. 관련법령 및 기타자료 : 덧붙임

남양주시 조례 제 호

##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br/>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 6. (생략)</p> <p>7. <u>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u></p> <p>8.·9. (생략)</p> | <p>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p> <p>-----<br/> -----<br/> -----<br/>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u><br/> -----</p> <p>8.·9. (현행과 같음)</p>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나. 재정 수반 요인

- 조례 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 수반요인이 없음

### 4. 작성자

미래도시추진단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 ①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한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 2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한한다)
    4.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
4.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5.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